

예 산 총 칙

2010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081,680,000	32,450,400
일반회계	902,100,000	27,063,000
특별회계	179,580,000	5,387,400
공기업특별회계	110,300,000	3,309,000
하수도공기업사업특별회계	63,500,000	1,905,000
상수도공기업사업특별회계	46,800,000	1,404,000
기타특별회계	69,280,000	2,078,400
주택사업특별회계	610,000	18,300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11,400,000	342,000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1,300,000	39,0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420,000	162,600
치수사업특별회계	2,000,000	60,000
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100,000	33,000
청소사업특별회계	44,400,000	1,332,0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2,000,000	60,000
수질개선특별회계	1,050,000	31,50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사고이월사업조서는 별첨 "사고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244,704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발행한도액은 58,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 및 다음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 보수, 기타직 공무원의 보수
2.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직무수행경비
3. 배상금, 국선번호료, 법정보상금
4. 재해 대책비
5. 반환금
6. 선거관련 경비